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1. 6 선고 2024가단263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16.

판결 선고 2024. 11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이 유

피고가 2019. 12. 2.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

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20. 1. 29.부터 2022. 1. 28.까지, 임대차보증금 5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년 연장된 사실, 원고가 2023. 5. 25.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. 20.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아영

별지